

라파지, IFBWW, ICEM 과 WFBW 간에 체결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

2005. 9. 12

Lafarge / ICEM / IFBWW / WFBW

라파지 그룹과 국제산별연맹들인 IFBWW, ICEM, WFBW 는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적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IFBWW(국제건설목공노동자연맹)은 건설, 건설자재, 목재, 임업 및 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전세계 125 개국 281 개 노조에 소속된 1 천 5 십만 명의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는 국제산별노련이다.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동조합연맹)은 화학, 에너지, 광산 및 시멘트, 유리, 요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전세계 121 개국 425 개 노조에 소속된 2 천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국제산별노련이다.

WFBW(세계건설목공노조연맹)은 건설, 목재 산업에서 일하는 150 만 노동자를 대변하며, 전세계 41 개국 55 개 노조를 두고 있다.

라파지(Lafarge)는 건설자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며,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지붕재료, 석고 등 네 가지 사업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파지는 75 개국에서 7 만 7 천 명이 일하고 있다.

## 전문

---

라파지는 사회 진보와 경제 발전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믿는다. 라파지와 종업원의 이익과 성공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라파지는 열린 대화를 통해 그룹의 미래에 종업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종업원들은 스스로를 대변하기 위해 종업원 대표를 선출하거나 노동조합 조직을 선택할 수 있음을 라파지는 인정한다.

라파지의 철학은 라파지의 행동강령(the Lafarge Principle of Action)에 따라 종업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sup>1)</sup> “라파지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가치를 결합시킬 책임이 있듯이, 각국의 법률과 기준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따를 책임이 있다. 공동의 이익, 개방성, 대화, 통합과 헌신에 대한 존중은 그룹과 종업원의 주요한 윤리 원칙”이라고 행동강령은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관철은 임금과 노동조건, 전망 있는 일자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권 등이 좋은 노사관계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는다.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인권과 사회권을 존중하고 노동조건, 노사관계,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기준, 환경적 실천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바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계열사 원칙이 그룹 안의 핵심적인 성과 관리 과정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노사관계 문제는 현장에 최대한 밀착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원칙을 존중한다.

라파지는 노동자 권리의 존중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라파지는 아래에 제시된 원칙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사업 파트너, 하청회사, 부품공급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 노력할 것이다.

## 기본 원칙

---

라파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원칙과 작업장 권리 선언, ILO의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 선언, 국제연합(UN)의 세계협약(Global Compac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강제노동 철폐

노예노동과 비자발적인 감옥 노동을 비롯한 강제노동의 직간접적인 사용을 금지한다(ILO 협약 29호 및 105호).

### 고용차별 금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출신 혹은 기타 구별되는 특징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작업장이 어디든 간에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는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ILO 협약 100호 및 111호). 당해 기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최소한 그 나라의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와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 **아동노동 사용 금지**

아동노동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용을 금한다. 단, 15 세가 넘거나 의무적으로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나이보다 많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할 수 있다(ILO 협약 138 호). 연령의 측면에서 18 세 미만의 아동은 작업의 성격과 특징상 해당 아동의 건강과 안전 혹은 품성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

라파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인정하며, 그 권리를 지지한다(ILO 협약 87 호 98 호).

라파지 그룹은 노동자 대표를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ILO 협약 135 호).

## **생활임금**

노동자는 해당 국가의 현행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산업/부문에 적용되는 기준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임금 조건에 관해 자기 말로 된 구두 정보와 서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임금에 대한 공제가 이뤄질 수 없다. 초과노동은 과도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며 할증률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1 주에 최소 1 일의 휴식기간을 주어야 한다.

## **보건, 안전 및 노동조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한다(ILO 협약 155 호). 최상의 산업안전보건 관행을 따라야 하며, ILO 의 산업보건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HIV/에이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ILO 의 HIV/에이즈 실천강령에 부합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 **직업 훈련**

모든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숙련 수준을 높이는 훈련과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언제나, 라파지 그룹은 노동자의 숙련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개발에 참여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노동자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

## **이행과 사후 점검**

라파지 그룹은 본 협약에 관한 정보를 서면 및 구두의 형태로 본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나라에 제공할 것이다.

모든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라파지가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 본 협약의 내용을 가능한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라파지 경영진과 협약에 서명한 국제 산별연맹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reference group)는 최소 1년에 1회 혹은 필요하다면 언제나 본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합을 가져야 한다. 라파지 그룹은 평가위원회의 임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 협약에 대한 연례 평가는 모든 협약 서명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라파지 그룹의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모든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관련 당사자들을 위한 권고를 만들기 위해 본 협약의 해석 혹은 이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입장의 차이를 함께 점검하는 데 동의한다.

## **유효기간**

---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은 서명한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협약 서명 당사자 한쪽이 요구하면 수정될 수 있다.

2005년 9월 12일, 파리

라파지 그룹을 대표해서 Christian Herrault

IFBWW 를 대표해서 Antia Normrk

ICEM 을 대표해서 Fred Higgs

WFBW 를 대표해서 Stefaan van Tourenhout